

#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

## 1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: 2025. 7. 14.(월) ~ 7. 25.(금) (10일간)
- 조사대상: 평택도시공사 등 6개 기관 (필수 5, 재량 1)

평택도시공사	평택시로컬푸드재단	평택시문화재단	평택시청소년재단	평택복지재단
7. 14(월) ~ 16(수) (3일)	7. 17(목) ~ 18(금) (2일)	7. 21(월) ~ 22(화) (2일)	7. 23(수) ~ 24(목) (2일)	7. 25(금) (1일)

\* 평택산업진흥원(재량)은 '25년 기관 종합감사(25. 2. 6. ~ 14.) 시 채용실태 조사 병행 추진

\*\* 평택시장학재단은 필수 조사대상기관이나 채용 미실시('21~'24년)로 조사 대상 제외

- 조사범위: 2024. 1. 1. ~ 2024. 12. 31. 채용 실태 전반
- 관련근거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행동강령의 시행·운영)
  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5호

## 2. 조사결과

구 분	행정상 조치	신분상 조치	비 고
계	총22건	총☆☆명	
평택도시공사	주의 1	(생략)	
평택시로컬푸드재단	주의 4, 개선 1, 권고 1	(생략)	
평택시문화재단	개선 2, 주의 4	(생략)	
평택시청소년재단	주의 3, 개선 1	(생략)	
평택복지재단	개선 1, 시정 1	(생략)	
평택산업진흥원	개선 2, 주의 1	(생략)	종합감사 시 별도 처분

### 3. 주요지적

- 대다수의 공직유관단체가 채용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은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지적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
- 이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엄중 주의 조치하되 채용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조치

제 목	예비합격자 채용에 관한 사항 [평택시□□□□□]
지적사항	평택시□□□□□은 「인사규정 시행세칙」 제5조의3(예비합격자 제도)에 따라 202☆년 제☆회 직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결정한 이후 최종합격자 1명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하였음에도 예비합격자 임용 절차없이 202☆년 제☆회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해당 분야 결원을 신규 채용함
처분요구	<b>【주의 요구】</b> 내부 규정과 다르게 채용 자격기준을 정하거나 최종 임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채용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'주의 요구'

※ 평택시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에서도 동일 사유로 인해 동일한 처분 요구함

제 목	채용시험의 절차, 평가기준 및 채용 자격기준 등 미준수 [평택시▣▣▣▣▣]
지적사항	평택시▣▣▣▣▣에서는 「인사규정」 제18조(채용절차 및 시험방법 등)에는 서류전형(심사)는 채용분야별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 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 자격요건 충족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202☆년 제☆차 직원 채용 시 임의로 작성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실시(채용 공고 시 해당 기준도 미안내)하였으며,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(1명)의 5배수 이내로 결정한다고 채용 공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특별한 이유없이 고득점자순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함
처분요구	<b>【주의 요구】</b> 내부 규정에 따른 채용 자격기준,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과 다르게 직원 채용 수립 및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'주의 요구'

<b>제 목</b>	<b>202☆년 제☆회 채용 재공고에 관한 사항 [평택○○○○]</b>
<b>지적사항</b>	<p>평택○○○○에서는 직원 채용 관련 재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체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, 202☆년 제☆회 평택○○○○ 직원 공개채용 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재공고 관련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채용 공고문에도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, 2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전형 평가 결과 1명이 부적격으로 판단되자 「인사조직지침」의 “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준용하여 재공고를 실시함</p>
<b>처분요구</b>	<p><b>【개선·주의 요구】</b> 재공고 기준 등에 대해 내부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‘개선요구’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은 채용계획 및 공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‘주의 요구’</p>

#### 4. 처분요구목록

연번	기관명	제 목	처분요구		
			행정상	재정상 (천 원)	신분상
계	5개 기관	총 19건	총 19건 주의 12 개선 5 권고 1 시정 1	-	(생략)
1	평택 ▷▷▷▷	부서 정원 초과 채용 및 채용 필요인력 산정 등 부적정	주의		
2	평택시 ▣▣▣▣▣▣	202☆년 제☆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	주의		

연번	기관명	제 목	처분요구		
			행정상	재정상 (천 원)	신분상
3	평택시	내부규정과 다른 채용 자격기준, 서류심사 합격자 기준으로 직원 채용	권고 주의		
4	평택시	202☆년 제☆회 채용 ‘채용자격기준’에 관한 사항	주의		
5	평택시	예비합격자 채용에 관한 사항	주의		
6	평택시	채용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	주의		
7	평택시	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에 관한 사항	개선		
8	평택시	응시자격기준 미준수 및 공고문 작성 소홀(202☆년 제☆차 직원채용)	주의		
9	평택시	채용계획 사전 협의 소홀(202☆년 제☆차 직원채용)	주의		
10	평택시	채용시험의 절차, 평가기준 및 채용 자격기준 등 미준수	주의		
11	평택시	채용계획 재공고에 관한 사항	주의		
12	평택시	202☆년 ♣♣♣♣ 및 ♠♠♠♠♠♠ 채용 관련	개선 주의		
13	평택시	예술 단원 채용 공고 및 규정 미흡에 관한 사항	개선 주의		
14	평택시	공무직 임용 자격기준, 예비합격자 제도 등 미준수	주의		
15	평택시	기간제근로자( )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	주의		
16	평택시	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에 관한 사항	개선 주의		
17	평택시	202☆년 제☆차 직원 채용 면접 공고에 관한 사항	주의		
18	평택	202☆년 제☆회 채용 재공고에 관한 사항	개선 주의		
19	평택	평택 인사규정 특별채용 부적정	시정		

붙임 : 처분요구서 1부(별첨). 끝.